#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30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04. 12. 21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4. 12. 23(목)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2. 23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**(건설과장 석명준)**

가. 제안이유

○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각각 적립·운용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과 아울러 시행령(5.29), 시행규칙(6.12)의 제정 ·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필요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4조)

○ 당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후 익년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,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.(안 제6조)

○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, 영 제74조 제1항,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

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
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
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
4.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 구입
5.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안 제7조)

○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과 관련하여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에 관하여 정함.(안 제8조)

○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3.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. (안 제11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**(전문위원 : 박태영)**

가.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·시행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각각 적립 · 운용되던 **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폐지**하고 **평창군 재난관리기금**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,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

나.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먼저,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기금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마련되었고 조례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히 운영되기 위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,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재난관련 해당부서장과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○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 5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 :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 ·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**

#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23일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사유

○ 안 제11조제4항의 위원구성에 있어 관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특성상 긴급한 집행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관계전문가를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○ 안 제11조 제4항중 "관계전문가로"를 삭제한다

#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 ·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 제4항중 "관계전문가로"를 삭제한다

# 수정안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~③ (생략)<br>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. | 제11조(구성) ①~③ (생략)<br>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으로 구성한다. |